

고등교육기관별  
'12학년도 대출한도  
설정 평가 및 개선 연구

2012. 1.





고등교육기관별  
‘12학년도 대출한도  
설정 평가 및 개선 연구

책임연구원: 하 연 섭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
공동연구원: 이 영 (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)

연구보조원: 황 소 하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)

연구협력관: 한 성 윤 (한국장학재단 팀장)

2012. 1.

한 국 장 학 재 단



# 제 출 문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본 보고서를 「고등교육기관별 '12학년도 대출한도 설정  
평가 및 개선 연구」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12. 1.

- 주관연구기관명 : 연세대학교
- 연 구 기 간 : 2011.05.11 ~ 2012.1.31.
- 주관연구책임자 : 하 연 섭



# 요 약

## 1. '13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표

-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제한 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표와 일관성 유지
  
- 연체율(기존 상환율) 유지
  -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에서는 연체율(기존 상환율)을 제외할 예정이나 대출 제한대학지표에서는 연체율(기존 상환율)을 유지
  - 단,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의 배점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존 10%에서 5%로 하향 조정
  
- 법인지표 추가
  -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표에 법인지표(5%)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, 지표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자금대출제한 지표에도 법인지표(5%) 추가
  
-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 교원 확보율(10% → 7.5%), 장학금 지급률(5% → 10%), 교육비 환원율(10% → 7.5%)의 배점을 조정
  
- 전문대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4년제 대학의 배점과 동일하게 조정
  - 이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은 '12년 40%에서 30%로 하향 조정

-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권장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2.5%에서 10%로,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환원율을 5%에서 7.5%로, 그리고 산학협력 수익률을 2.5%에서 5%로 각각 상향 조정
- 전임교원 확보율은 4년제 지표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0%에서 7.5%로 조정
- 또한 4년제와 같이 연체율은 10%에서 5%로 조정하고 법인지표(5%)를 추가함

<표 1> '13년 학자금대출제한 지표

구 분	4년제 대학		전문대학	
	대출제한	재정지원제한	대출제한	재정지원제한
취업률	20%	20%	20%	20%
재학생 충원율	30%	30%	30%	30%
전임교원 확보율	7.5%	7.5%	7.5%	7.5%
학사관리	5%	10%	5%	10%
장학금 지급률	10%	10%	10%	10%
교육비 환원율	7.5%	7.5%	7.5%	7.5%
연체율(기존 상환율)	5%	-	5%	-
등록금 부담완화	10%	10%	5%	5%
법인지표	5%	5%	5%	5%
산학협력 수익률	-	-	5%	5%

## 2. '13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선정 방법

- 1) 재정지원제한대학(하위 15% 대학)을 먼저 선정
- 2) 이와 독립적으로 대출제한대학 지표를 활용하여 대출제한대학 후보대학을 선정



- 3)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절대지표 2개 이상 미충족대학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
  - 단,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하위 15%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하위 15%에 동시에 포함된 대학에 한하여 선정
- 4)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모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모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함

### 3. '13년 절대평가 지표

#### 가. 취업률

##### 1) 취업률 산정 D/B 변경에 따른 문제

- 국세 D/B를 활용하여 1인 창업 및 프리랜서까지 취업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취업률 평균값이 변화
- 건보 D/B만을 활용하는 취업률 평균은 '11년 현재 4년제는 50.6%이며 전문대는 55.2%
- 국세 D/B를 활용할 경우 종합취업률의 평균이 4년제의 경우 54.6%, 전문대는 58.3%로 건보 D/B에 의한 취업률에 비해 각각 4.0%p, 3.1%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
- '12년처럼 종합취업률 평균의 91~92% 수준으로 취업률의 절대기준을 변경

할 경우, 취업률의 최소기준은 4년제의 경우 49.7~50.2%, 전문대의 경우 53.1~53.6%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  
- 취업률의 최소기준은 4년제와 전문대 각각 전체 대학의 하위 30% 수준임

- 이와 동시에 '13년에는 예체능계인정취업률을 포함하므로 '12년 기준에 의한 최소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
- 이에 따라 취업률의 최소기준은 4년제의 경우 51%, 전문대의 경우 55%로 설정

## 2) 남녀 구분에 따른 문제

-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변경(안)에 따르면 남녀 취업률을 구분하여 계산
- 그러나 학자금대출제한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상환가능성이 중요함
- 또한 남녀 구분에 의한 취업률 계산은 t점수에 의존하나 절대기준은 t점수를 활용할 수 없음
- 따라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에 있어서는 남녀 취업률의 구분이 아니라 전체 취업률을 활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

## 나. 재학생 충원을

- 정원 내 충원율만을 계산하지만 절대기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 최소기준을 유지

#### **다. 전임교원 확보율**

- 기존에 제시했던 대학 통·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원 확보율(4년제의 경우)은 61%였음
  - 그러나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이 없어짐
- 2011년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은 4년제 64.88%, 전문대 54.25%임
- 기존에 4년제에 요구하던 전임교원 확보율 61%는 2011년 4년제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의 94% 수준
- 동일한 수준을 전문대에 요구할 경우, 전문대 전임교원 확보율의 최소기준은 51%
- 4년제와 전문대의 편제정원 대비 교원확보율 최소기준은 4년제와 전문대 각각의 전체 대학 수의 하위 30~40% 수준임

#### **라. 교육비 환원을**

- 교육비 환원을 산정시 총교육비에서 도서구입비를 추가
- 기존에 등록금 수입에서 충당하던 법정부담금 등을 법인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액이 증가할 수 있음
- 이에 따라 교육비 환원율의 최소기준을 4년제 100%, 전문대 95%로 상향 조정

마. '13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

○ '13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는 다음의 <표 2>와 같음

<표 2> '13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

구 분	기 준		근 거
	4년제	전문대학	
취업률	51%	5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세 D/B를 활용하므로 취업률의 상향 조정 필요</li> <li>■ 취업률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상승률만큼 각각 기존 최저수준을 상향 조정</li> <li>■ 4년제와 전문대 평균취업률의 91~2% 수준</li> </ul>
재학생 충원율	90%	8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</li> <li>■ (전문대) 평가인증 기준의 100% 수준</li> <li>■ (4년제)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</li> </ul>
전임교원 확보율	61%	51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4년제와 전문대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의 94% 수준에서 설정</li> </ul>
교육비 환원율	100%	9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총교육비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, 기존의 등록금수입에서 총당하던 법정부담금 등을 법인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액의 증가 가능성 고려</li> </ul>